

#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5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2. 18) 상정

○ 제157회 부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2. 18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김 창 열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9585호, 2009. 4. 1. 공포·2009. 10. 1. 시행)됨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“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”를 추가 규정함.(안 제5조제2호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.	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.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없 음

#### 나. 반대토론

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없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##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”를 “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유통산업발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6조에 근거하여”를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하며, 제3항 중 “각호의 자중에서”를 “각 호의 자 중에서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.

1.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·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
2.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
3.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
4.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5일전까지”를 “5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50인이상의”를 “50명 이상의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각 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, 2호,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신청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주소 및 연락처
2. 상대방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주소 및 연락처
6.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

제11조 중 “유사한 사유로”를 “동일한 사안에 대하여”로 하고, “다수의”를 “그 다수의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3일이내에”를 “3일 이내에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60일 이내에”를 “60일 이내에”로 하며, 제3항 중 “단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단서에 따라”로 하고, 제4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하며, 제5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15일이내에”를 “15일 이내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다음 각호의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해지역의”를 “해당 지역의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하고, “당해분쟁”을 각각 “해당 분쟁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목 중 “(자료요청등)”을 “(자료요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15일이내”를 “15일 이내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제12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”를 “법 제37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19호
의결 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1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9585호, 2009. 4. 1. 공포· 2009. 10. 1. 시행)됨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“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”를 추가 규정함.(안 제5조제2호)

##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”를 “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유통산업발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6조에 근거하여”를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내”를 “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중”으로 하며, 제3항 중 “각호의 자중에서”를 “각 호의 자 중에 서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.

1.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·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
2.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

3.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

4.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5일전까지”를 “5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50인이상의”를 “50명 이상의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, 2호,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신청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 
주소 및 연락처

2. 상대방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 
주소 및 연락처

6.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

제11조 중 “유사한 사유로”를 “동일한 사안에 대하여”로 하고, “다수의”를 “그 다수의”로 한다.



제12조제1항 중 “3일이내에”를 “3일 이내에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60일이내에”를 “60일 이내에”로 하며, 제3항 중 “단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단서에 따라”로 하고, 제4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하며, 제5항 중 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15일이내에”를 “15일 이내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다음 각호의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해 지역의”를 “해당 지역의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하고, “당해분쟁”을 각각 “해당분쟁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목 중 “(자료요청등)”을 “(자료요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15일이내”를 “15일 이내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제12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”를 “법 제37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b>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</b>	<b>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</b>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유통산업 발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36조에 근거하여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유통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36조에 따라 ----- -----필요한 ----- -----.
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(생략) ③위원회의 위원은 유통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	제2조(구성) ① ----- 1명 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각 호의 자 중 에 서-----.
제5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. 1.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·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. 다만,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	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. 1.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·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2.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. 다만,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</p> <p>3.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2.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.</p> <p>3.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</p> <p>4.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
<p>제6조 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6조(회의) ① ----- -----5일 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 (회의록) ① (생략) ②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회의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각 호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 (간사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<u>1인</u>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담당과장이 된다.</p>	<p>제 8 조 ( 간 사 ) ----- - - - - - 1 명 -----.</p>
<p>제9조 (일비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</u>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,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일비 등) ----- ----<u>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</u> -----.</p>
<p>제10조 (분쟁의 신청) ①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<u>50인이상</u>의 연서로,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(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)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②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신청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</u></p> <p>2. <u>상대방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</u></p> <p>3.~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</u></p>	<p>제10조(분쟁의 신청) ① ----- -----<u>50명</u> <u>이 상 의</u> ----- -----. ②----- -----<u>각 호</u> -----. 1. <u>신청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주소 및 연락처</u> 2. <u>상대방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주소 및 연락처</u> 3.~5. (현행과 같음) 6. <u>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 (조정신청의 통합)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조정신청의 통합) ----- -----동일한 사안에 대하여-----그 다수의 ----- -----.</p>
<p>제12조 (조정절차) ①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조정절차) ① ----- -----3일 -----내 ----- -----.</p>
<p>②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②----- -----60일-----이내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③-----단서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</p>	<p>④-----제2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⑤ 제4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15일-----이내에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 (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)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당해</u>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분쟁이 <u>당해지역의</u>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2. (생략)</li> <li>3. 다른 법률의 <u>규정에</u> 의하여 인가·허가·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</li> </ol>	<p>제13조(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<u>해당</u> ----- 지역의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<u>규정에</u> ----- 따라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4조 (위원의 기피) 위원회 위원 중 <u>당해분쟁조정과</u>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<u>당해분쟁조정</u>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4조(위원의 기피) ----- 위원 중 <u>해당분쟁</u>-----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5조 (자료요청등)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당해</u>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<u>자료요청</u> -----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 (조정에 대한 불복)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조정에 대한 불복) 제12조에 따라 ----- -----15일 이내 ----- -----.</p>
<p>제17조 (조정 효력) 당사자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7조(조정 효력) ----- 제12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8조 (비용의 부담)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. 다만, 당사자간 비용 부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.</p>	<p>제18조(비용의 부담) 법 제37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따른다.</p>
<p>제1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9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 필요한 ----- -----.</p>